

[3장 이용계약 및 절차]

제12조 (이용계약의 원칙과 절차)

① 복지용구 이용계약은 주된 사용자인 어르신이 노인임을 고려하여, 수급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수급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를 최대한 탐색하여 제품 제공 내용과 계약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합니다.

1. 계약 기간 명시 : 대여 품목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을 정합니다. 구입 품목은 판매일에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의 계약 기간은 설정하지 않습니다.

1. 계약 목적 확인 : 이 계약의 주된 목적은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복지용구 사용을 통해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를 예방하여 보다 독립적인 삶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1. 계약 체결 및 서류 관리 : 계약서는 총 2부를 작성하며, 1부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합니다.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거나 서명 능력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명란을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사유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수급자의 손을 같이 쥐고 서명 필기를 돕는 방법으로 서명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 시 필요한 서류 : 수급자(또는 가족)는 계약 내용에 따라 복지 용구 급여 이용을 위해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 요양 인정서 사본, 표준 장기 요양 이용계획서 사본(해당 시, 필요에 따라 제출),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증명서 사본(해당 시, 필요에 따라 제출), 복지 용구 급여확인서 사본(해당 시), 그 외 필요한 서류

나. 급여 이용 가능 : 이러한 계약이 체결되면 수급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복지용 구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특례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계약 체결과 동시에 희망하는 급여 내용을 담은 입소 이용 의뢰서(복지용구사업소명 등을 기재)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직접 신청하거나, 사업소에서 대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13조 (성실한 계약 이행 의무)

① 상호 계약이 성립되면, 복지 용구 제공 사업소와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의무 사항을

포함합니다.

1. 복지용구 사업소의 의무

- 가. 대여 제품 관리 및 안내 : 전동 침대와 같은 대여 품목은 수급자가 병원이나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할 경우, 반드시 회수 및 급여 구분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계약 전 수급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 나. 급여 제한 사항 고지 :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복지 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복지 용구를 제공받을 시 그 책임이 수급자에게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 다. 타 법령 중복 수급 제한 설명 : 다른 법령에 따라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해야 합니다.
2.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의 권리
- 가. 신원 인수인의 권리 : 복지용구의 하자 발생 시 사후관리(A/S)를 요구할 권리
- 나. 수급자의 계약 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
3.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의 의무
- 가. 수급자의 건강 및 병적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 나.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을 부담할 의무
- 다. 대여 기간 중 거주지 변경, 입원/입소,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동이 생겼을 때는 즉시 사업소에 통지할 의무
- 라.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사업소에 통보할 의무
- 마. 수급자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훼손, 파손, 멸실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

제14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① 연 한도액 :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 원으로 합니다.
- ② 한도액 적용 기간: 연 한도액(공단 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산)의 적용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됩니다.
- ③ 한도액 초과 시 부담: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합니다.

연 이용한도	구분	공단부담(%)	본인부담금(%)	비고
1,600,000원	일반	85%	15%	
	의료수급자 경감수급자	91%	9%	
	의료수급자 경감수급자	94%	6%	
	기초수급자	100%	0%	

제15조 (계약의 종료 및 변경)

① 계약의 종료 및 변경

1. 구입 방식으로 제공된 복지용구는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후 사용이 시작된 시점부터 반품이나 환불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제품의 위생 및 재활용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 기관은 다음의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충분히 협의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에는 최소 7일 전에 통지하여 원활한 절차가 진행되도록 합니다.
 - 가.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되어 더 이상 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
 - 나.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발생했거나 안타깝게 사망한 경우
 - 다. 이용료 납부가 6회 이상 연속적으로 연체되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라.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고의적인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해 대여 품목의 정상적인 서비스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1. 수급자가 일시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 시설에 입소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일부 대여 품목의 서비스가 잠정적으로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추후 상호 협의를 통해 계약 효력이 자동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2. 수급자(또는 보호자) 측에서 위에서 언급된 사항 외의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하실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또는 계약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사전에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제16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절차)

-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충분히 협의 하여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서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 나. 현재 이용 계약서상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 다. 장기요양보험 표준약관 항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용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 ② 위 1항의 요건에 해당하여 이용료가 변경될 경우, 사업소는 반드시 새로운 이용 계약서를 재작성하며,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변경 내용을 명확히 고지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등으로 수가(서비스 가격)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된 이용료 납부 등에 대한 별도의 변경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제4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부담 안내]

제17조 (서비스 내용 및 비용 부담 안내)

① 복지용구급여란, 심신기능 저하로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용구를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② 복지용구 급여는 크게 구입 방식과 대여 방식으로 나뉩니다.

1. 구입 방식 : 수급자가 지정된 구입 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직접 지불하고 제품을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2. 대여 방식 : 수급자가 대여 품목을 일정 기간 빌려 사용하고, 해당 제품의 대여 가격 중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③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복지용구 급여 품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구입 품목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 및 미끄럼방지양말), 간이변기(간이대변기, 간이소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등이 있습니다.
2. 대여 품목: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등이 있습니다.

(참고: 욕창예방매트리스와 경사로는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한 품목입니다.)

④ 저희 복지용구 사업소는 수급자와 보호자분들이 취급 제품(급여 품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방식을 제공합니다. 사업소 내에 ['복지용구 전시 및 체험장']을 운영하여, 품목별 규정에 따른 제품을 직접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 급여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등 가격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취급 품목의 상세 정보를 담은 소책자나 카탈로그를 상시 비치하여 편리하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